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3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4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타수입(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2024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023년 결산 결과 ‘기타수입(고향사랑기부금 수입)’ 이 당초 123백만원에서 297백만원으로 174백만원 증가하여, 2024년도 수입계획상 ‘예치

금 회수' 등 411백만원 증액함.

- 증액사유 : '23년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174백만원)하여 기타수입 ('24년 목표 모금액)을 당초 100백만원에서 330백만원으로 230백만원 증액, 이자수입을 3백만원에서 11백만원으로 8백만원 증액, 예치금회수를 125백만원에서 298백만원으로 173백만원 증액함.

나.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 금액 등이 당초 227백만원에서 638백만원으로 411백만원 증액(180.7%) 되었음.

- 변경사유 : '23년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여 예치금을 당초 209백만원에서 599백만원으로 390백만원 증액,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항목 및 사업비 30백만원 편성, 위원회 운영비 등 간소화로 기금관리비 당초 1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9백만원 감액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 내용 >

(단위 : 백만원, %)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27	638	411	180.7
세외수입	103	341	238	231.6
경상적세외수입	3	11	8	
이자수입	3	11	8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공공예금이자수입	3	11	8	290.2
	임시적세외수입	100	330	230	
	기타수입	100	330	230	
	기부금수입	100	330	230	23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	298	173	138.7
	보전수입등	125	298	173	
	예치금회수	125	298	173	
	예치금회수	125	298	173	138.7

< 2024년 지출계획 변경 내용 >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27	638	411	180.7
재무활동		209	599	390	186.4
	보전지출	209	599	390	
	여유자금 예치	209	599	390	186.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30	30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30	30	
	제도홍보(사무관리비)	-	30	30	
행정운영경비		18	9	△9	△47.3
	기본경비	18	9	△9	
	기금관리비(사무관리비)	18	9	△9	△47.3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변경안의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 증가에 따른 변동 내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됨.

나.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²⁾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2021. 10. 19. 시행: 2023. 1. 1.)의 시행³⁾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서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3년에 설치됨.
-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됨⁴⁾.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하 표의 수치는 백만원 단위 변환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2022.12.30. 제정, 2023.1.1. 시행).

4)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 2천 5백만원, 수입계획액은 1억 2백만원, 지출계획액은 1천 8백만원이고, 2024년도말 조성액은 2억 9백만원(전년도말 대비 8천 4백만원, 67.2%)임.

<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㉑	2024년도 조성계획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 = ㉑ + ㉓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㉓ = ㉔ - ㉕	
125	102	18	84	209

- 그러나 2023년도 결산 결과, 2023년도말 조성액은 목표 모금액(1억원)을 초과 달성하여 총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2억 9천 8백만원이 됨.

< 2023년도 결산 결과 고향사랑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㉑	2023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 = ㉑ + ㉓
	계 ㉓ = ㉔ - ㉕	조성액 ㉔	사용액 ㉕	
-	298	298	-	298

- 참고로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564천원), 기부금수입(239,037천원), 그외 수입(57,966천원)으로 당초 계획액 1억 2천 5백만원 대비 1억 7천 3백만원(138.7%)이 증가한 2억 9천 8백만원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증감	비고
합 계	124,637	297,567	297,567	172,930	
경상적 세외수입	1,632	564	564	△1,068	
공공예금 이자수입	1,632	564	564	△1,068	공공예금 이자 익년도 지급으 로 결산이자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	62,345	297,003	297,003	234,658	
기부금수입	62,345	239,037	239,037	176,692	목표 기부금 수입 초과 달성
그외수입	-	57,966	57,966	57,966	기금계좌 개설('23. 8.) 후 세 입과목 변경 (전입금→그외 수입)
내부거래	60,660	-	-	△60,660	
기타회계 전입금	60,660	-	-	△60,660	(일반회계 전입금) '그외수입'으로 과목변경 후, 직접 수납처리

- 지출은 기부금수입(그외수입 포함)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함에 따라 예치금 2억 9천 8백만원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증감	비고
합 계	124,637	297,567	172,930	
보전지출 (고향사랑기금)	124,637	297,567	172,930	
예치금	124,637	297,567	172,930	목표 기부금 초과 달성에 따라 예치금 증가

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

-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 결과,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부금이 수납됨에 따라 기존 계획에서 기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향사랑기금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2024년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초	변경계획(안)	증 감 (B-A)	구 분	당초	변경계획(안)	증 감 (D-C)
합 계	227	638	411	합 계	227	638	411
이자수입	3	11	8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	209	599	390
기타수입	100	330	230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비 등)	-	30	30
예치금회수	125	298	173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18	9	△9

- 수입계획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이자수입은 기부금 수입 증가로 정기예금 예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액 3백만원 대비 8백만원(290.2%)이 증가한 1천 1백만원임.
 - 기타수입(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기부금 모금액의 목표치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2억 3천만원(230%)이 증액된 3억 3천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모금액(2억 9천 7백만원)에서 약 10% 증가한 것임.

- 예치금회수는 2023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을 증액 예치함⁵⁾에 따른 2억 9천 8백만원임.

<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초계획 (A)	변경 후 (B)	증감 (B-A)	증감률 (%)	주 요 내 역
계	227	638	411	180.7	
이자수입	3	11	8	290.2	정기예금 예치 규모 증가로 11백만원으로 증액
기타수입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00	330	230	230.0	- 목표 모금액 상향 - 전년도 최종 모금액 (297백만원) 대비 약 10% 증액
예치금 회수	125	298	173	138.7	'23년도 결산 결과 목표 모금액 초과 달성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액

* 위 표의 수치는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백만원 단위 변환)으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존재함

○ 지출계획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재무활동(예치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기부금 수입 증가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액 2억 9백만원 대비 3억 9천만원(186.4%)이 증가한 5억 9천 9백만원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제도홍보)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신설되는 정책사업 항목으로, 기부자 이벤트, '고향사랑의 날' 행사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순증함.

5) '23년 지출계획액 125백만원 → 298백만원으로 증액 예치

- 행정운영경비(기금관리비)는 종전 홍보비 편성 부분(신설 정책사업 항목에 반영)을 제외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비 등 1천만원임.

<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초계획 (A)	변경 후 (B)	증감 (C)=(B-A)	증감률 (C)/(A)	주 요 내 역
계	227	638	411	180.7	
재무활동	209	599	390	186.4%	
예치금	209	599	390	186.4%	'23년 결산 결과 목표 모금액 초과 달성하여 예치금 증액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30	30	순증	
사무관리비(홍보비 등)	-	30	30	순증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위 한 정책사업 항목 편성
행정운영경비	18	10	△8	△47.3	
기금관리비	18	10	△8	△47.3	기금운용심의위원회·답 례품선정위원회 운영비 등 기금관리비 변경

* 위 표의 수치는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백만원 단위 변환)으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존재함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⁶⁾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동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186.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신설, 순증), 행정운영경비(△47.3%)가 각각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별도의 문제는 없음.
- 동 변경안은 2023년도의 기부금 수입이 증가된 실적을 토대로 기부금 모금액의 목표치를 조정함과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사업을 정비한 것이 특징임.
- 기부금 수입은 전년도 총 기부금 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하여 3억 3천만원으로 설정하였는바, 이러한 변경은 시민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연말 소득 공제 혜택 등으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 것임.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 운영 관련 각종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새롭게 신설된 정책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제도홍보를 위해 신설된 항목으로, 고향사랑의 날 행사와 기부자 이벤트 등으로 3천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고향사랑의 날’ 행사⁷⁾

7) 2023. 9. 2. ~ 2023. 9. 4.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행사로, 제1회 고향사

에 참여하고자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중 답례품 제공 예산을 전용하여 홍보관 대여료,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천 9백 만원(29,234천원)을 지출한 바 있음.

-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⁸⁾에 따르면, 답례품 제공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답례품 제공 예산을 동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⁹⁾되어 시행 예정인바, 별도의 정책사업 항목 신설을 통해 제도 홍보 및 답례품 제공 운영 예산의 집행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참고로 동 기금운영계획은 2023년도에 이어 지출계획이 여전히 예치금 적립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 정도의 기금 적립이 선행되어야 함은 이해되나, 향후 기금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필요가 있음.

량의 날 기념식,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됨.

8)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9) 개정 2024. 2. 20. 시행 2024. 8. 21.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